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제안경위

1. 이새날 의원 대표발의안

가. 제출자 : 이새날 의원 외 49명

나. 의안번호 : 제1012호

다. 제출일자 : 2023. 7. 31.

라. 회부일자 : 2023. 8. 21.

2. 김동욱 의원 공동발의안

가. 제출자 : 김동욱 의원 외 27명

나. 의안번호 : 제1286호

다. 제출일자 : 2023. 10. 10.

라. 회부일자 : 2023. 10. 23.

3. 최기찬 의원 대표발의안

가. 제출자 : 최기찬 의원 외 15명

나. 의안번호 : 제1401호

다. 제출일자 : 2023. 10. 16.

라. 회부일자 : 2023. 10. 23.

II. 제안사유

1. 이새날 의원 대표발의안

- 현행 조례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에 미비한 점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고자 함

2. 김동욱 의원 공동발의안

-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관한 가중처벌 규정(일명 ‘민식이법’)이 마련되었으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통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도로에서 여전히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서 금지하고 있는행위와 보행자 통행 및 보호에 관하여 어린이들에게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보행신호 안내를 통하여 주의를 환기 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 장치를 강화하여 어린이들이 교통안전에 관한 사전 지식과 보호장치를 바탕으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최기찬 의원 대표발의안

-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바,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한 스쿨존 내 보행안전기기(차량용 방호벽 및 스마트 스쿨존 보행안전시스템 등)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1. 이새날 의원 대표발의안

- 가. 상위 법령과 중복되고 조례에서 사용되지 않는 정의 규정을 삭제함(안 제2조)

- 나.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그 개선 결과를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4항 신설)
- 다.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실태조사에 교육시설의 장과 그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의 보호자의 의견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2항 신설)
- 라. 그 밖에 부자연스러운 표현 등을 수정함.

2. 김동욱 의원 공동발의안

- 가.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장소에 통학로에서 도로교통법 제68조에 따른 도로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주의가 필요한 곳을 추가로 규정함(안 제7조의3)
- 나. 어린이 안전교육에서 도로교통법 제68조에 따른 도로에서의 금지행위와 통학로에서 보행자 통행 및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 수칙에 관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안 제8조)

3. 최기찬 의원 대표발의안

- 가. 시장이 어린이 보호구역 및 어린이통학로, 교육시설 등의 장

소에 설치할 수 있는 안전시설 및 재정지원 사항에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보행안전시설을 설치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의5제1항제7호 신설)

IV. 참고사항

1. 이새날 의원 대표발의안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3. 8. 24. ~ 2023. 8. 28.

○ 제출의견 :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¹⁾

○ 제출의견 : 원안가결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 취지에 공감하며, 실태조사 시 교육시설의 장과 어린이 보호자의 의견을 포함함으로써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에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용하고자 함

1) 보행자전거과-12327호(2023.8.24.) “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의견 제출”

2. 김동욱 의원 공동발의안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3. 10. 26. ~ 2023. 10. 30.

○ 제출의견 :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치 결과²⁾

○ 제출의견 : 원안 수용

-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도로에서 눕거나·앉거나·공놀이 등’의 행위에 대해 추가하는 개정으로 원안동의함

3. 최기찬 의원 대표발의안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2) 보행자전거과-16512호(2023.11.14.) “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의견 제출”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3. 10. 26. ~ 2023. 10. 30.
- 제출의견 :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치 결과³⁾

- 제출의견 : 원안 수용
 - 시장이 보호구역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안전시설 중 스마트 보행안전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 동의함

3) 보행자전거과-16512호(2023.11.14.) “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의견 제출”

V.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1. 이새날 의원 대표발의안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수립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개선결과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고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에 대한 실태조사 시 교통시설의 장과 어린이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토록 규정하는 한편 그 밖의 동 조례에 사용되지 않는 용어 정의와 부자연스러운 표현 등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용어 정의 수정 관련(안 제2조)

- 안 제2조는 동 조례에 사용하지 않는 불필요한 용어(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삭제하고, 개정안에서 삭제된 용어의 정의를 모두 포함하도록 상위 법령을 인용하여 동 조례 제5호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구조와 형식을 간단 명료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기본계획수립 등 관련(안 제4조)

- 안 제4조는 시장이 수립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개선결과를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는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임
- 등·하교 시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통해 통학로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실 있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개선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시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은 필요하다 할 것임

■ 실태조사 관련(안 제5조)

- 안 제5조는 시장이 매년 어린이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해당 교육시설의 장과 그 교육시설에서 교육받는 어린이의 보호자 의견을 포함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임
-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상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잘 파악하고 있는 해당 교육시설의 장과 보호자의 의견을 '실태조사' 시 포함하는 것은 내실 있는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 할 것임

■ 안전시설 설치 및 재정지원 관련(안 제7조의5제1항)

- 안 제7조의5제1항은 시장이 어린이보호구역 및 어린이 통학로 등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필요시 각 호의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시설중 제3호인 “옐로카펫”에 대한 용어를 “주변과 구분되는 도색의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로 이해가 쉽게 풀어서 표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국토교통부 훈령 「사람중심으로 설계지침」 4)에서 ‘옐로카펫’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옐로카펫”을 “ 「사람중심으로 설계지침」 제2조제13호에 따른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옐로카펫, yellow carpet)”으로 수정하여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

■ 기타 조문 수정 관련((안 제7조의2, 제7조의4, 제7조의5, 제8조, 제9조, 제11조)

- 동 개정안(안 제7조의2, 제7조의4, 제7조의5, 제8조, 제9조, 제11조)은 현 조례 조문의 부자연스러운 표현 등을 「국어기본법」 5)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6)에 따라 띄어쓰기와

4) 「사람중심으로 설계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373호)

제2조(용어의 정의)

13.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옐로카펫, yellow carpet)”란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안전한 곳에서 대기 하고 있는 동안 운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하도록 바닥 또는 벽면을 노랗게 표시하는 교통안전 설치물을 말한다.

외래어 표기기준을 반영하여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2. 김동욱 의원 공동발의안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통학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⁷⁾” 설치장소를 확대하고 시장이 실시할 수 있는 어린이 안전교육 내용을 추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장소 관련(안 제7조의3)

- 안 제7조의3은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위치를 어

5) 「국어기본법」 제14조(공문서등의 작성·평가)

① 공공기관등은 공문서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6)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10판), 법제처」, 부록 / 정비권고 용어

3. 정비 대상 용어 : LED → 권고안 : 발광다이오드, 엘이디(LED)

7)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2조(정의)

7.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란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무단횡단방지와 녹색횡단신호 시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함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시설 주변 또는 어린이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⁸⁾에 “통학로에서 법 제68조⁹⁾에 따른 도로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주의가 필요한 곳”으로 설치 위치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 「도로교통법」에서 ‘도로’의 정의를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서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 조례에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는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무단횡단방지과 녹색횡단신호 시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음
- 따라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위해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주의가 필요한 장소까지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확대 설치하도록 하는 것도 교통

8)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7조의3(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및 재정지원)

① 시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이 있는 장소 또는 어린이 무단 횡단이 예상되는 곳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9)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이전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
 2.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
 3.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놀이 또는 썰매타기 등의 놀이를 하는 행위
 4. 돌·유리병·삿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5.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6.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 뛰어오르거나 매달리거나 차마에서 뛰어내리는 행위
 7. 그 밖에 시·도경찰청장이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행위

안전보호 측면에서 이해된다 할 것임 다만, 소음민원 및 무분별한 설치로 인한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설치가 필요하다 할 것임

■ 어린이 안전교육 내용추가 관련(안 제8조)

- 안 제8조는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이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내용에 관련 법 제68조에 따른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및 통학로에서 보행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 수칙에 관한 지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동 조례 제8조제2항¹⁰⁾에 따라 시장이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어린이 대상 교통홍보물 제작과 캠페인을 시행¹¹⁾하고 있으며 교통운영과에서 매년 교통안전 관련 동영상 제작 및 교육¹²⁾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 담당부서에서는 조례개정 내용을 자치경찰위원회와

10)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8조(어린이 안전교육)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 교육
2.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11) 2023년도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서

- 교통홍보활동(전환사업) 224,670천원, 서울청 교육홍보비 110,000천원
· 어린이 대상 홍보물 제작 및 캠페인 등 20,000천원

12) 교통운영과-3893호(‘23.3.17.) “2023년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추진 계획(안)”
교통운영과-4862호(‘23.4.5.) “2023년 교통약자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 운영”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임

3. 최기찬 의원 대표발의안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스쿨존 등 어린이 통학로에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행을 위해 시장이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한 스마트 보행안전시설”을 추가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안 제7조의5는 시장이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장소에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한 스마트 보행안전시설(이하 ‘스마트 보행안전시설’이라 함)”을 설치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는 것임
- 동 조례¹³⁾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어린이통학로, 교육시설이

13)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의5(안전시설 설치 및 재정지원) ①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어린이통학로, 교육시설이 있는 장소 또는 어린이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 등에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있는 장소 또는 어린이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 등에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에 대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이라 함)」 제4조14)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스마트 보행안전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이해된다 할 것임

- 다만, ‘보행안전시설’에 대해서는 ‘보행안전법’ 제15조1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시설의 종류, 구조 및 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스마트 보행안전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14)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5)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설치)

- ① 특별시장등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행환경개선지구 안의 도로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1. 차량 속도 저감시설
2. 횡단보도, 교통섬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
3.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의 보행자 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보행자 우선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
5. 보행자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한 대중교통정보 알림시설과 주변 지역 보행자길 안내시설
6.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 편의를 높이기 위한 시설로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 - 생략 -

-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구조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시설'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시설기준 등이 없는 실정임

- 따라서, 시장은 향후 조례 개정으로 '스마트 보행안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설치하는 경우 '보행안전법' 제15조제2항¹⁶⁾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해당 도로의 관리청 등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또한, 설치 시 동 조례 제7조의5제2항¹⁷⁾에 따라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설치·관리하여야 할 것임

16)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설치)

② 특별시장등은 도로에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2. 해당 도로의 관리청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17)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의5(안전시설 설치 및 재정지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